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6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 의 자 : 이주희 · 문진석 · 윤종균
최혁진 · 허성무 · 정혜경
손 술 · 정태호 · 용혜인
강득구 · 윤후덕 · 이광희
이훈기 · 전종덕 · 박정현
김상욱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로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폭력·학대 등의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청소년 자활·재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2020년 49,000여명에서 2024년 86,000여명으로 5년간 약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부족하여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도 사회적 보호·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상담·맞춤형 상담·복지 등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를 “그 밖에”로 한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 지원 및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8.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
9.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생 략) <u><신 설></u>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u>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u>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 복지 지원</u> 2. <u>상담 ·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u> 3. <u>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u> 4. <u>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u> 5. <u>청소년 폭력 ·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 의료 지원 및 일시 보호 지원</u> 6. <u>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u> 7. <u>우울 ·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u>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u>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u> 9. <u>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그 밖에----- ----- ----- ----- ----- ---
--	---